세계경제연구원

94-03
1994. 2. 21

세계경제지평
Global Economic Horizon

기회와 위협으로서의 中國
— 점증하는 한·중 무역마찰 —

김 완 순 (자문위원, 고려대 교수)

한·중 무역확대에 따른 한·중 무역마찰

중국은 대외개방적 정책노선을 채택한 1978년 이후 국제교역을 급속히 확대시켜 왔다. 더우기 태평양 연안국가에 편중된 중국의 무역과 투자는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을 추구하는 아·태지역 경제권의 활력소가 되고 있다. 한·중 경제교류는 1979년 홍콩을 경유한 간접무역이 개시된 이래 급속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1985년까지 양국간 교역은 대부분 간접적이고 복잡다기한 구상무역의 형태로 이루어져 한·중 무역규모는 연간 2억달러 정도의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었으나, 1992년 8월에 체결된 韓·中國交正常化를 계기로 양국간의 무역과 경제협력은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였다. 1992년 한·중 무역 규모는 82억 달러에 육박하였다. 직·간접 수출을 포함해서 우리의 對中輸出은 전년대비 무려 90% 신장하여 45억달러에 이르렀으며, 對中國 輸入은 8%의 완만한 신장세를 보인끝에 37억달러를 기록하였다. 그결과 1988년을 제외하고 1991년까지 적자를 보여 왔던 對中國貿易收支는 7.6억달러의 흑자로 반전하였다.

요약하면, 1980년부터 1992년의 12년기간 한·중 무역규모는 世界 兩國間 貿易史上 그 유례가 없는 32%의 연평균 신장율로 증가하였다. 물론 이러한 폭발적인 증가세는 비교 시발점 연도의 매우 낮은 무역량에 기인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中國이 1990연대말에는 미국 혹은 일본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두번째로 중요한 교역상대국으로 그리고 21세기초에는 제 1위의 최대교역국으로 부상할 것을 예측하고 있다.

이와같이 한·중교역이 급속도로 확대되어 나가면서 두나라 사이에 무역분규와 마찰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中國은 우리나라 상품 수출의 新市場으로 부각되고 있는 한편, 두나라는 동시에 국내외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자가 되고 있다. 中國의 주요 수출품목이 노동집약적인 공산품에 집중되어있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제품의 수출에 특화되고 있는 우리기업은 국내외시장에서 中國의 강력한 경쟁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결코 놀라운 사실이 아니며 예측가능한 현상이다. 임금의 급격한 상승때문에 산업구조의 신속한 고도화만이 우리의 불가피한 代案이며, 中國은 매우 낮은 노임을 바탕으로 우리의 전통적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산 농산물수입의 급증과 조정관세의 발동

중국산 제품의 가장 충격적이고 위협적인 시장침투는 농산물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다. 1989년까지도 中國으로부터의 농산물 수입은 우리 무역통계에서 여타항목에 포함될 정도로 그 규모가 소량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1992년 우리의 對中國 농산물 수입액규모는 對中國 총수입액의 약 33%를 차지하였으며, 우리나라의 對世界 농산물 수입액의 13%를 점유하여, 중국은 미국 다음으로 우리의 두번째로 큰 농산물 공급국가로 등장하였다. 1992년 우리의 對中國 농산물 무역수지는 11억 달러를 초과하는 적자를 시현하였다.

그런데 우리가 中國으로부터의 일부 수입품에 심각성과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최근 저렴한 중국산 농산물등 1次산품의 수입이 단기간내에 급증하여 생산농민, 중소기업의 피해구제 대책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입체도산, 가동율저하, 재고누적등의 문제로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정치,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부담이 되고있다는 사실이다. UR협상타결이후 시장개방의 가속화와 함께 중국농산물의 수입이 더욱 급증할것으로 보인다. 상호 호혜적인 무역시장은 질서있고 양국의 이해에 부합되어야 하며, 일국의 관련산업을 단기간에 도산시키는 양상으로 수입이 급증해서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것이다.

양국간의 무역분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다양한 중국산 농산물에 부과되는 우리나라의 조정관세와 반덤핑조치를 중국당국은 두나라사이에 야기되는 제일 대표적인 무역분규로 보고 있다. 국내가격을 훨씬 밑도는 동종 수입품의 급증은 국내시장을 교란시키고 해당기업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러한 輸入品을 억제하려는 우리의 산업피해구제 조치가 중국측의 불만을 자아내고 있는 것이다.

시장교란적인 輸入급증을 우리정부는 조정관세의 발동으로 대처하여 오고 있다. 조정관세 대상품목은 어떤 물품의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 거래질서를 혼란케하는 경우에 대해 국내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최소한의 기간(2년)동안 임시적으로 운용하는 것으로 특정국가를 겨냥하는 조치는 아니다.

1990년 4월부터 1993년 3월까지 나무젓가락, 당면등 총 45개 품목에 대하여 우리 정부는 최고 100%에 이르는 조정관세를 부과·운영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중국산은

25개품목(56%)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으로부터의 수입품목이 다수 포함되는 이유는 농산물 및 低價의 수입품이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입액은 총 11억9백만달러, 이 가운데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1억6천8백만달러로서 전체적인 한·중무역규모에 대비해서 미미한 수치이지만 중요한 것은 중국으로부터 우리시장에의 시장교란적 침투가 구제조치발동의 결정적 요건이 된다는 것이다.

농수산물교역은 우리에게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低價 농산물의 輸入急增에 직면하여 비교적 짧은 기간내에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을 겪어야 하는 농민은 중국으로부터의 농수산물수입에 거세게 저항하고 있다. 농산물 교역의 자유화가 가져오는 부정적인 측면에 대응하는 한편 양국사이에 상호호혜적인 교역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정부는 농민의 사활을 좌우하는 농산품의 輸入억제를 物量으로 보다는 잠정적인 조정관세를 정책수단으로 사용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중국측은 조정관세의 부과를 철회하도록 요청하고 있으며, 이같은 조치를 취할 경우 사전협의를 요망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측도 한국산 철강수입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보복적 무역전쟁은 모두의 손실이다. 우리도 조정관세조치를 점진적으로 해제하여야 하겠지만 중국측도 소나기식 저가 수출공세를 자제하는 노력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중국산 공산품수입에 대한 반덤핑관세 조치

우리나라는 지난 1987년 7월 무역위원회를 설립하여 외국제품의 수입급증 및 반덤핑공세로부터 발생하는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산업피해구제제도를 운영하여 오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반덤핑관세의 부과등 피해구제제도는 대외무역법, 관세법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엄격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판정기구에서 객관적인 자료에 입각하여 조사하며, 생산자, 수입자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므로써 GATT 국제규범에 일치되게 운영하여 오고 있다.

1987년 11월부터 1993년 7월까지 무역위원회는 수입급증 22건 그리고 덤핑수입 9건 총 31개 품목에 대한 피해조사를 진행하였는데, 이 가운데 수출국 中國의 경우는 수입급증 8건과 반덤핑 3건 총 11건이 산업피해 대상품목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가운데 7건이 중국으로부터의 농산물이었다.

精製인산, H-산 및 소다회 3개 공산품이 不公正貿易 대상으로 제소·조사되었다. 정제인산에 대해서는 중국산 정제인산의 수입물량이 조상대상기간인 지난 3년간 (1989－1991) 연평균 47.6%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수입가격도 국내가격에 비해 현저히 낮은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었고 국내 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판정되어 1993년 2월 20일부터 3년간 공업용의 경우 최저 40.96로부터 최고 54.28%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되었다. H-산건은 구매합의로 국내업체가 덤핑제소를 철회하여 덤핑조사가 중단·종결되었다.

중국산 소다회가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중국수출자를 무역위원회에 제소한 동양화학공업주식회사는 중국산 소다회의 수입이 1991년의 4,

417톤에서 1992년에는 27,568톤 그리고 1993년 상반기에는 35,492톤으로 폭증하였을 뿐만 아니라 톤당 가격도 1991년 174달러에서 1992년에는 톤당 157달러로 하락하여 제소기업의 생산, 판매, 경영상태등이 전반적으로 악화하여 실질적피해를 입었음을 제시하였다. 한편 중국측은 우리나라 소다회 덤핑조사에 대해서 강력한 불만을 나타냈다. 중국측은 한국의 대중국 소다회 輸入量이 1992년의 경우 한국의 총수요의 5% 미만이였으며, 한국의 대세계 소다회 總輸入量의 10%에도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중국산 소다회가 한국의 해당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줄 수 없었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중국측은 반덤핑제도의 법적성격과 관계없이, 양국 수교이후 3번째의 빈번한 반덤핑 제소임을 지적하고, 한국의 반덤핑조치가 수입규제 수단이 되고 있다고 반박하였다.

문제의 원만한 해결방안을 서로 모색하고 있던 중 중국의 주 수출자인 2개업체와 제소자간에 수출물량축소 약속제의가 작년 12월 7일에 합의되어 (1994년부터 3년간 수출물량을 5.5만톤으로 축소) 덤핑관세부과가 취소되었다. 그러나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1993년 12월 31일부터 3년간 66.1%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기로 결정되었다.

한중교역관계의 향방

한·중교역관계를 치열한 경쟁 및 무역분규라는 다소 부정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다시말해서, 농산물을 포함한 1차산품과 단순노동집약적인 제품분야에서 中國이 저렴한 가격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이다. 중국측은 소나기식 수출로 혹은 덤핑공세로 수입국의 관련산업에 심각한 또는 실질적 피해를 주는 무역관행이 국제규범에 위배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과도한 수출공세를 자제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우리로서는 경쟁열위의 산업을 과감히 도태시키고 하루속히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추진시켜야 한다. 中國이 경제성장을 향후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만큼 현재 경쟁력 면에서 유리한 중화학공업제품의 교역을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저자약력

학 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중퇴
미국 Boston대학교 경제학석사
미국 Harvard대학교 경제학박사

경 력 : IMF Economist
한국개발연구원 수석연구원
ADB Senior Economist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장(현)
상공부 무역위원회 위원장(현)
세계경제연구원 자문위원(현)

세 계 경 제 연 구 원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9, 무역센타 2505
(서울 무역센타 우체국 사서함 112)
전화 : 551-3334/7 Fax : 551-3339

이 글은 집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 둡니다.

본 글의 무단 전재·역재·복사를 금함